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 설명자료 |

I 대상범죄

01 • 교통범죄의 의의¹⁾

- 협의의 교통범죄
 - ❑ 교통형사범(교통기관을 수단 또는 대상으로 한 형법 및 특별법상 범죄)
 -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교통방해의 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 등

- 광의의 교통범죄
 - ❑ 협의의 교통범죄 + 형을 과하도록 규정된 교통규칙 위반행위(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 최광의의 교통범죄
 - ❑ 광의의 교통범죄 + 교통규칙 이외의 교통관계 행정단속법규를 위반한 경우 중 그에 대하여 형을 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위(궤도운송법상 무면허 궤도부설행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무면허 자동차운송사업 경영행위 등)

02 •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가. 형법

죄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불통 기타 방법으로 교통 방해	제185조	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표지 손괴,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의 교통 방해	제186조	징역 1년 이상

1) 손기식, 「교통형법」(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33~35면
 송광섭, “교통범죄의 현황과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1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220~230면

죄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 현존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전복, 매몰, 추락, 파괴	제187조	무기, 징역 3년 이상
교통방해치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 죄로 치상	제188조	무기, 징역 3년 이상
교통방해치사	제185조 내지 제187조 죄로 치사	제188조	무기, 징역 5년 이상
과실 교통방해 등	과실로 제185조 내지 제187조 죄	제189조 제1항	벌금 1,000만 원 이하
업무상과실, 중과실 교통방해 등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제185조 내지 제187조 죄	제189조 제2항	금고 3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

- ❑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교통시설이나 교통기관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 보호법익은 공중의 교통 안전임

나. 고속국도법

죄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고속국도 손괴 등	고속국도 손괴하여 고속국도의 효용 해하거나 교통 위험 발생	제11조 제1항	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
고속국도 손괴로 인한 자동차 전복 등	제11조 제1항 죄로 자동차 전복, 파괴	제12조 제1항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고속국도 손괴로 인한 자동차 전복 등 치상	제12조 제1항 죄로 치상	제12조 제2항	징역 1년 이상
고속국도 손괴로 인한 자동차 전복 등 치사	제12조 제1항 죄로 치사	제12조 제2항	무기, 징역 3년 이상

- ❑ 교통방해죄의 대상이 고속국도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법

다. 도로법

죄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도로 손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손괴하여 도로 효용 해하거나 교통 위험 발생	제96조	징역 10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 ❑ 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도로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법

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죄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 ²⁾ 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범함	제3조 제1항	금고 5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 반의사불벌 다만,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후 도주, 유기도주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 해당시 반의사불벌 제외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금고 5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

- ❑ 업무상 과실·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 치상을 야기한 운전자에 대하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법(교통사고에 관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중대한 과실 치사상죄에 대한 특별법)
- ❑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통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도주, 유기도주, 음주측정불응, 11가지 예외사유)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 보험계약 등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 등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

마. 도로교통법

죄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 3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교통법 제2조 제2호)

죄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음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 3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약물운전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제148조의2 제3호, 제45조	징역 3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무면허운전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 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 1년 이하, 벌금 300만 원 이하
사고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음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
업무상과실 · 중과실 재물손괴	업무상과실 ·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기타 재물 손괴	제151조	금고 2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을 세분화한 개정 도로교통법³⁾이 최근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은 2011. 12. 9.임

3)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 2011. 6. 8. 공포, 2011. 12. 9. 시행)

제148조의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죄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치사 후 도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 사망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무기, 징역5년 이상
치상 후 도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징역 1년 이상,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치사 후 피해자 유기 도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기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 후에 피해자 사망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사형, 무기, 징역 5년 이상
치상 후 피해자 유기 도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유기 도주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징역 3년 이상
위험운전치사	음주·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치사	제5조의11	징역 1년 이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치사	제5조의11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 도주한 사고차량운전자를 치사 또는 치상의 결과와, 단순도주 또는 유기도주의 구별에 따라 가중처벌
- ❑ 위험운전치사상죄(제5조의11)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관계
 -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법 제268조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 보호
 - 도로 이외 장소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
 -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상 형식적인 혈중알콜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0.0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함
 - 따라서 양 죄는 입법취지, 보호법익,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제적 경합관계(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지 않음

03. 양형기준 설정범위

가. 대상범죄 선정 원칙

- ❑ 국민적 관심, 범죄 발생빈도, 징역형 선고비율, 범죄의 성격상 양형기준 설정에 적합

한지 여부 등을 고려

- ❖ 법정형이 낮거나 발생빈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범죄는 대상 범죄에서 제외함이 타당

나. 구체적 검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및 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 : 제외
- ❖ 고의에 의한 폭행·협박범죄 → 교통기관의 운행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범죄와는 범죄의 속성이 다름
- ❖ 자동차 운행 중인 운전자라는 피해자 및 상황이 특수한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한 조항 →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교통방해범죄와 유사하나, 교통기관 또는 교통시설을 대상으로 한 손괴 등 행위인 교통방해범죄와는 대상 및 수단이 다름
- ❖ 교통사고범죄 또는 교통방해범죄와 행위태양, 양형인자가 상이하어 교통범죄의 유형 분류 및 양형인자표에 포섭하기 어려움
-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2)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 등 : 제외
- ❖ 교통규칙위반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특가법위반 범죄에 비해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로교통법위반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거나 경미함
- ❖ 교통사고범죄 등 다른 범죄가 경합되지 않는 한, 실무상 대부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어 징역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낮음
 - 2009년 교통범죄의 죄명별 검찰 처리현황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중 구공판 비율이 3.1%에 불과(구약식 비율 83.5%, 불기소 12.0%, 기타 1.3%)
- ❖ 구공판사건의 경우도 징역형 선고비율이 높지 않으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안의 대부분은 집행유예 결정자, 2~3회 이상의 동종전과자인 경우임
 - 피해자가 없는 단속법규 위반 범죄의 특성상 동종 전과, 혈중알콜농도 외에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 찾기 어려움

- ❑ 선고형은 대체로 징역 4월~8월 사이에 분포⁴⁾ → 양형편차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형의 폭이 너무 좁아 감경/기본/가중영역으로 구분된 권고형량범위 설정이 어려움

 - 무면허운전은 징역 4월과 6월이 86% 차지 {4월(56%), 6월(30%)}
 - 음주운전은 징역 4월과 6월이 92.6% 차지 {4월(21%), 6월(71%)}
 - 음주측정거부는 징역 4월과 6월이 100% 차지 {4월(40%), 6월(60%)}
- ❑ 특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세분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아직 시행 전(시행일 2011. 12. 9.)이므로 양형기준 설정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

 - 개정 법률에 따른 양형실무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형량기준을 선형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현행 양형기준 형량범위 설정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부적절
 -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및 동종 전과에 따라 음주운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을 세분화(① 0.2% 이상 또는 2회 이상 동종 전과 또는 음주측정 거부 : 징역 1년~3년, ② 0.1~0.2% : 징역 6월~1년, ③ 0.05~0.1% : 징역 6월 이하)하여 실질적으로 처단형의 세분화 실현 →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거의 없음
- ❑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3) 형법

- 교통방해(형법 제185조 내지 제188조, 고속국도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 2항, 도로법 제96조) : 제외
- ❑ 찬성론 : 혐의의 교통범죄에 포함되고, 범죄의 결과나 사회적 위험성이 중하여 법정형이 높은 범죄가 많으며, 범죄발생빈도는 낮으나 중한 결과나 위험 발생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양형기준의 설정으로 일반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있음
- ❑ 반대론 : 발생빈도 또는 징역형 선고비율이 매우 낮아 양형인자나 권고형량범위를 양형실무에서 추출하기 어렵고⁵⁾, 특히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대부분 구약식사건인데다 구공판 사건의 대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와의

4) 2010. 10.부터 2011. 4.까지 전국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교통범죄 사건(단일범) 중 각 사건의 비율에 맞게 무작위로 선택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83건(무면허운전 50건, 음주운전 28건, 음주측정거부 5건)의 개략적 분석결과

5) 최근 1년간(2010. 4.~2011. 4.) 전국 1심 법원 구공판사건에서 단일범으로서 징역형 선고된 사안은 일반교통방해(제185조)가 4건, 기차 등 교통방해(제186조)가 4건에 불과하고, 기차 등 전복(제187조), 교통방해치사상(제188조), 도로법 제96조 위반, 고속국도법 위반사건은 한 건도 검색되지 않았음

경합범이며, 이 중 상당수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낮음

- 과실 교통방해(형법 제189조, 고속국도법 제11조 제2항) : 제외
- ❖ 과실 교통방해는 법정형에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고, 중과실 및 업무상과실 교통방해는 법정형이 낮을 뿐만 아니라 범죄발생빈도가 매우 낮음
- ❖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 교통방해 미수범(형법 제190조) : 제외
- ❖ 교통방해의 미수범은 실무상 거의 없음
- ❖ 제1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중 살인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군에 대하여 미수범의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
- ❖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 ▶ 2011. 9. 5. 개최된 제42차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① 특가법상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및 치사상죄’는 교통사고범죄와는 범죄의 속성이 다르고, ②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일단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경과를 지켜 본 후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생기면 그 때 논의하기로 하며, ③ 교통방해범죄(과실범, 미수범 포함)는 발생빈도가 낮아 양형인자나 권고 형량범위를 통계적으로 추출하기 어려워 양형기준의 설정 필요성이 낮거나 설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모두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 → 교통사고범죄에 한정하여 양형기준초안을 작성함

다.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 가벌성이 높은 형법 및 특별법상 교통형사범, 즉 협의의 교통범죄(대인 교통사고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
 - 교통사고범죄 및 특가법상 치사상 후 도주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 특가법상 치사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치사 후 유기 도주, 치상 후 유기 도주, 위험운전 치사, 위험운전 치상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 설정
- ❖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을 대상범죄로 삼는 것이 타당

II 범죄유형 분류

01 • 유형분류의 필요성

- ❑ 대인 교통사고범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⁶⁾
- ❑ 대인 교통사고범죄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는 교통사고 후 도주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후, 교통사고의 결과, 도주의 태양, 위험운전 여부에 따라 다양한 법정형으로 세분화된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음
 - 치사상 결과만 야기한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교통법 제3조)과 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1)을 구분
 - 치사상 결과 야기 후 도주한 경우에 치사상 후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치사상 후 유기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2항)로 구분하여 가중처벌
- ❑ 교통사고범죄의 보호법익, 특성, 법정형 및 선고형 분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관된 원칙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02 • 양형기초자료 분석결과

가. 선고형 분포

- 중국 내역

단위 : 명, %

세부죄명		1심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1항, 제2항단서) - 피해자 사망이 발생한 경우	수	35	397	432
	비율	8.1	91.9	100.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1항, 제2항단서) - 피해자 상해가 발생한 경우	수	40	430	470
	비율	8.5	91.5	100.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수	5	33	38
	비율	13.2	86.8	100.0

6) 손기식, 전계서, 151~152면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결과 보고

단위 : 명, %

세부죄명		1심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수	19	193	212
	비율	9.0	91.0	100.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수	2	2	4
	비율	50.0	50.0	100.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수	1	3	4
	비율	25.0	75.0	100.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수	15	191	206
	비율	7.3	92.7	10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수	79	308	387
	비율	20.4	79.6	10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수	9	56	65
	비율	13.8	86.2	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	142	505	647
	비율	21.9	78.1	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수	30	278	308
	비율	9.7	90.3	100.0
전체	수	377	2,396	2,773
	비율	13.6	86.4	100.0

● 선고 형량 분포

단위 : 명, %

세부죄명		징역 · 금고기간(월)														전체	
		2	3	4	5	6	7	8	10	12	14	15	18	24	30		36
교특법(제3조 제1~2항)사망	수	0	0	7	0	88	0	104	111	95	8	0	16	3	0	0	432
	비율	0.0	0.0	1.6	0.0	20.4	0.0	24.1	25.7	22.0	1.9	0.0	3.7	0.7	0.0	0.0	100.0
교특법(제3조 제1~2항)상해	수	0	2	49	12	259	0	100	36	10	2	0	0	0	0	0	470
	비율	0.0	0.4	10.4	2.6	55.1	0.0	21.3	7.7	2.1	0.4	0.0	0.0	0.0	0.0	0.0	100.0
특가법(제5조의3 제1항 1호)	수	0	0	0	0	0	0	1	0	0	0	1	1	1	24	10	38
	비율	0.0	0.0	0.0	0.0	0.0	0.0	2.6	0.0	0.0	0.0	2.6	2.6	2.6	63.2	26.3	100.0

단위 : 명, %

세부죄명		징역·금고기간(월)															전체
		2	3	4	5	6	7	8	10	12	14	15	18	24	30	36	
특가법(제5조의3제1항 2호)	수	0	0	0	0	83	0	65	24	36	0	0	2	1	1	0	212
	비율	0,0	0,0	0,0	0,0	39,2	0,0	30,7	11,3	17,0	0,0	0,0	0,9	0,5	0,5	0,0	100,0
특가법(제5조의3제2항 1호)	수	0	0	0	0	0	0	0	0	0	0	0	1	2	1	4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5,0	50,0	25,0	100,0	
특가법(제5조의3제2항 2호)	수	0	0	0	0	0	0	0	1	1	0	0	2	0	0	4	
	비율	0,0	0,0	0,0	0,0	0,0	0,0	0,0	25,0	25,0	0,0	0,0	50,0	0,0	0,0	100,0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수	0	0	14	0	84	0	76	15	8	1	0	8	0	0	206	
	비율	0,0	0,0	6,8	0,0	40,8	0,0	36,9	7,3	3,9	0,5	0,0	3,9	0,0	0,0	10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수	4	28	245	11	85	0	11	3	0	0	0	0	0	0	387	
	비율	1,0	7,2	63,3	2,8	22,0	0,0	2,8	0,8	0,0	0,0	0,0	0,0	0,0	0,0	10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수	2	0	11	2	29	0	12	7	1	0	0	1	0	0	65	
	비율	3,1	0,0	16,9	3,1	44,6	0,0	18,5	10,8	1,5	0,0	0,0	1,5	0,0	0,0	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	2	7	192	20	346	1	61	15	3	0	0	0	0	0	647	
	비율	0,3	1,1	29,7	3,1	53,5	0,2	9,4	2,3	0,5	0,0	0,0	0,0	0,0	0,0	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수	0	2	69	4	171	0	51	9	2	0	0	0	0	0	308	
	비율	0,0	0,6	22,4	1,3	55,5	0,0	16,6	2,9	0,6	0,0	0,0	0,0	0,0	0,0	100,0	
전체	수	8	39	587	49	1,145	1	481	221	156	11	1	30	6	27	2,773	
	비율	0,3	1,4	21,2	1,8	41,3	0,0	17,3	8,0	5,6	0,4	0,0	1,1	0,2	1,0	100,0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사망)의 경우, 금고 6월 이상 1년 이하가 92.2%를 차지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상해)의 경우,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가 99.2%를 차지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치사 후 도주)의 경우,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가 89.5%를 차지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치상 후 도주)의 경우,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가 98.2%를 차지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치사 후 유기도주)의 경우, 징역 2년 이상 3년 이하가 100%를 차지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치상 후 유기도주)의 경우, 징역 10월 이상 1년 6월 이하가 100%를 차지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가 88.9%를 차지

03 · 구체적 유형화 방안

가. 설정방식의 개요

- ❑ 교통사고범죄는 교통사고 후 도주 여부를 기준으로 일반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도주의 2가지로 크게 구분(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 발생만으로 범죄가 완성되고 비난의 근거가 운전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에 있는 반면, 교통사고 후 도주죄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이른바 ‘뺑소니’ 라고 하는 별도의 도주행위가 개입됨으로써 윤리적·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훨씬 증가한다는 점에서 일반 교통사고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
 - 일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결과에 따라 다시 (i) 교통사고 치상, (ii) 교통사고 치사로 세부 유형 구분
 - 교통사고 후 도주는 교통사고 결과 및 도주 행위태양에 따라 (i)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ii) 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도주, (iii)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 (iv)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도주로 세부 유형 구분
- ▶ 2011. 10. 17. 개최된 제43차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를 4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안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

나. 유형의 구분

1) 일반 교통사고

-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2) 교통사고 후 도주

-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 ❖ 제2유형(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도주)
- ❖ 제3유형(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
- ❖ 제4유형(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도주)

04 · 권고 형량범위

가. 개요

- **형량범위 설정상 고려사항**
 - ❖ 해당 유형의 교통사고범죄에서 발현되는 전형적 위험성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구분된 유형에 다양한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형량을 정하여야 할 것임
 - ❖ 양형실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형량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정형을 염두에 두고 개별 형량범위에 있어서 규범적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형량범위 설정의 출발점**
 - ❖ 일반 교통사고범죄 유형 중 치상죄의 형량에 관한 통계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금고 4월~1년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
 - ❖ 일반 교통사고범죄 유형 중 치사죄의 법정형은 치상죄와 동일하나, 형량에 관한 통계분석결과에 의하면, 선고형은 금고 6월~1년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
 - ❖ 교통사고 후 도주범죄 유형 중 치상 후 도주죄의 형량에 관한 통계분석결과에 의하면, 주로 징역 6월~1년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
 - ❖ 교통사고 후 도주범죄 유형 중 치상 후 유기 도주죄의 형량에 관한 통계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징역 10월~1년 6월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
 - ❖ 교통사고 후 도주범죄 유형 중 치사 후 도주죄의 형량에 관한 통계분석결과에 의하면, 주로 징역 2년 6월~3년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
 - ❖ 교통사고 후 도주범죄 유형 중 치사 후 유기 도주죄의 형량에 관한 통계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징역 2년~3년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

- ❑ 특별양형인자의 개수 비교에 따라 유형별 영역 및 권고 형량범위가 결정되는데, 개별 양형인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 유형 내에서 영역 간 형량범위 중첩을 허용함

나. 유형 및 영역별 권고 형량범위의 검토

● 일반 교통사고

- ❑ 통계분석결과에 의하면, 제1유형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치사의 선고형은 주로 금고 4월~1년 사이에 분포하고, 제2유형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치사의 선고형은 징역 6월~1년 사이에 분포하고 있음
- ❑ 따라서 제1유형의 기본영역을 4월~10월, 감경영역을 6월 이하, 가중영역을 8월~1년 6월로 설정하고, 제2유형의 기본영역을 8월~1년 6월, 감경영역을 4월~10월, 가중영역을 1년~3년(결과가 증대한 점을 고려하여 가중영역 상한은 높게 설정)로 설정할 경우, 교통사고 치사상의 경험적 양형실무의 대부분을 포섭할 수 있을 것임
- ❑ 가중적 구성요건인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으로써 죄질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량 선택이 가능할 것임

● 교통사고 후 도주

- ❑ 통계분석결과에 의하면, 제1유형 해당 사건 중 약 60%가 징역 8월~1년 6월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제1유형의 기본영역은 8월~1년 6월, 감경영역은 징역 6월~10월, 가중영역은 징역 1년~3년으로 설정함
- ❑ 통계분석결과에 의하면, 제2유형 해당 사건 대부분이 징역 10월~1년 6월에 분포하고 있으나, 대상 사건수가 매우 적어서 유의미한 통계자료로 보기 어렵고,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라는 범행 태양이 단순 도주에 비하여 윤리적·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훨씬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법정형도 제1유형보다 훨씬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 관점에서 기본영역은 징역 2년~4년, 감경영역은 징역 1년 6월~2년 6월, 가중영역은 징역 3년~5년으로 설정함
- ❑ 통계분석결과에 의하면, 제3유형 해당 사건 대부분이 징역 2년 6월~3년에 분포하고 있으나, 대상 사건수가 그다지 많지 않고, 사망이라는 증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법정형도 제1유형보다 훨씬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 관점에서 기본영역은 징역 3년~5년, 감경영역은 징역 2년 6월~4년, 가중영역은 징역 4년~6년으로 설정함

- ▣ 통계분석결과에 의하면, 제4유형 해당 사건 대부분이 징역 2년~3년에 분포하고 있으나, 대상 사건수가 매우 적어서 통계자료가 유의미하다고 보기 힘들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데다가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라는 범행 태양이 단순 도주에 비하여 윤리적·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훨씬 증가하는 점, 법정형의 하한은 제3유형과 동일하나 사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3유형보다는 죄질이 더 무거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 관점에서 기본영역은 징역 3년 6월~6년, 감경영역은 징역 3년~5년, 가중영역은 징역 5년~8년으로 설정함

다. 형량범위의 설정

- ▣ 위에서 본 검토결과를 토대로 하여 유형 및 영역별 권고 형량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1)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 징역형 또는 금고형

2)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치사 후 도주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3년 - 5년	3년6월 - 6년	5년 - 8년

III 양형인자의 결정

01 • 통계분석결과

- ❖ 별지 통계분석결과 참조

02 • 양형인자 추출(안)

가. 일반 교통사고

● 특별양형인자

- ❖ 경험적 수치에 의한 양형인자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주취 중 또는 약물영향 하 운전), 피해자 과실 있음(도로 횡단인, 노변통행인), 경미한 상해(입원관계 없거나 1주 이하),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후유장애 있음
-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 경험적 수치에 의한 양형인자
 - 공탁, 후유장애 있음
-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동승자가 피해자인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 후 구호조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종합보험 가입,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교통사고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 경험적 수치에 의한 양형인자
-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범행 동

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양형인자

- 동종전과 있음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종합보험 가입,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03 · 양형인자 정리

가. 일반 교통사고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행위자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승자가 피해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후 구호조치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양형인자의 정의]

-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피해자의 안전모 또는 안전띠 미착용 등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확대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자동차종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에 준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도 포함한다.
-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함
- ❖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

아가 납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다만,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나. 교통사고 후 도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양형인자의 정의]

-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 정도, 외상의 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통증이나 진료의 호소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제1유형에 한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제1, 2유형)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제1, 2유형)
 -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제1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IV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상당 금액 공탁 •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 통계분석결과 >

1. 상관관계 분석결과

- ❑ 교통사고범죄에 있어서 개별 양형인자와 형량의 상관관계를 분석
- ❑ 분석대상 : 확정사건 및 추가 양형자료조사 결과(실형 및 집행유예 본형 포함)
- ❑ P : 유의확률

1) 교통사고 치사(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 변호인 구분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변호인	사선	79	10,582	3,5540	6.269**	0.002
	국선	127	9,102	3,2141		
	없음	226	9,372	2,7413		

*p < 0.05, **p < 0.01, ***p < 0.001

● 피고인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성별	남자	381	9,501	3,1877	-0,311	0,757
	여자	51	9,608	2,1548		
연령	20세 미만	3	16,000	3,4641	3,195**	0,004
	30세 미만	41	9,902	3,4627		
	40세 미만	85	9,365	2,6764		
	50세 미만	125	9,776	2,9862		
	60세 미만	121	9,388	3,1182		
	70세 미만	52	8,731	3,2426		
	70세 이상	5	9,600	0,8944		
학력	무학	3	12,667	9,8658	0,686	0,634
	초등학교	50	9,360	3,2687		
	중학교	56	9,714	3,2006		

*p < 0.05, **p < 0.01, ***p < 0.001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고등학교	152	9,618	2,9899	0,686	0,634
	대학교	78	9,641	3,4225		
	대학원	7	8,857	1,5736		
직업	무직	66	9,333	3,0450	0,773	0,716
	기업체 임원	1	8,000	-		
	회사원	87	9,011	3,2689		
	자영업(점포업자 등)	35	10,229	3,7187		
	교육직(교사·강사 등)	4	11,500	1,0000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1	10,000	-		
	기타 전문직	2	10,000	2,8284		
	농업·어업·임업·축산업	15	10,133	2,8752		
	기타 공무원	1	10,000	-		
	학생	6	12,333	4,6332		
	주부	18	9,333	2,0580		
	공원	1	10,000	-		
	운전사	145	9,462	3,0208		
	일용직(노무종사자)	20	9,800	3,4883		
	종업원	9	9,333	2,2361		
	종교인	4	10,000	1,6330		
	기타	17	9,529	2,2945		
	주거	주거 부정	1	6,000		
주거 일정		403	9,454	3,1131		
월 수입	없음	59	9,661	3,4069	0,265	0,932
	100만원 이하	51	9,176	2,7764		
	200만원 이하	156	9,641	3,3811		
	300만원 이하	34	9,824	3,4595		
	400만원 이하	1	8,000	-		
	500만원 이하	2	9,000	4,2426		
재산 여부	없음	109	10,165	3,4655	2,245*	0,025
	있음	198	9,283	3,1975		

*p < 0.05, **p < 0.01, ***p < 0.001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결과 보고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혼인관계	미혼	69	9,797	3,5504	0.837	0.524
	기혼(사실혼 포함)	263	9,612	3,0893		
	이혼	44	9,136	2,9380		
	사별	3	7,333	1,1547		
	동거	2	8,000	0,0000		
	별거(가출)	6	8,333	1,9664		
부양가족	없음	72	9,250	3,0845	-0.739	0.461
	있음	304	9,553	3,1356		
건강상태	양호	316	9,595	3,2210	1,013	0.364
	중증	8	10,000	2,8284		
	경증	56	8,964	3,1907		
사회적 유대 관계	높음	16	9,875	2,5788	0.411	0.523
	보통	66	9,394	2,7168		
장애인 유형	불해당	412	9,519	3,0997	0.169	0.866
	해당	20	9,400	2,7606		
범행당시 심신장애 여부	심신미약	1	8,000	-	0.241	0.623
	없음	431	9,517	3,0847		
	합계	432	9,514	3,0820		

*p < 0.05, **p < 0.01, ***p < 0.001

● 전과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초범 여부	아님	259	9,606	3,3848	0.803	0.422
	해당	173	9,376	2,5661		
동종 전과 여부	없음	266	9,338	2,6547	-1,397	0.164
	있음	166	9,795	3,6557		
이종 전과 여부	없음	253	9,455	2,9605	-0.475	0.635
	있음	179	9,598	3,2525		
집행유예 중 여부	아님	431	9,517	3,0847	0.491	0.623
	해당	1	8,000	-		

*p < 0.05, **p < 0.01, ***p < 0.001

● 경합범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부	아님	424	9,491	3,0942	-1,145	0,253
	해당	8	10,750	2,1213		

*p < 0.05, **p < 0.01, ***p < 0.001

● 공범 및 범행 후 정황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공범 여부	단독범	430	9,530	3,0768	1,619	0,106
	공범	2	6,000	2,8284		
자수·자복 여부	없음	305	9,462	2,9557	1,679	0,094
	있음	17	8,235	2,4375		
자백 여부	전부 자백	414	9,493	3,0877	0,988	0,373
	일부 자백	5	8,400	2,6077		
	전부 부인	7	10,857	3,9761		
반성 여부	없음	1	8,000	-	-0,555	0,579
	있음	240	9,708	3,0721		

*p < 0.05, **p < 0.01, ***p < 0.001

● 객관적 인자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범행장소	일반차도	220	9,282	3,1249	0,550	0,854
	자동차 전용도로	5	8,800	2,6833		
	고속도로	18	9,778	3,3529		
	주택가도로	19	10,211	2,4850		
	신호등 있는 교차로	40	10,150	3,4310		
	신호등 없는 교차로	28	9,286	4,0812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56	9,571	2,8722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4	9,429	1,9890		

*p < 0.05, **p < 0.01, ***p < 0.001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결과 보고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인도	1	12,000	-	0.550	0.854
	학교 앞	1	10,000	-		
	기타	25	9,920	2,4819		
사고유형	주·정차중인 차량 충돌	14	8,429	2,6228	1,738	0,070
	교차차량과 충돌	29	10,207	4,2877		
	선행차량과 충돌	21	10,571	3,6410		
	대향차량과 충돌	24	11,083	4,3331		
	병행차량과 충돌	13	9,077	3,2265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충돌	3	10,667	1,1547		
	사람을 침	306	9,301	2,7712		
	도로시설물과 충돌	6	9,667	4,6332		
	자동차 전복	4	11,500	1,9149		
	승객추락	1	6,000	-		
피고인 차량종류	기타	11	9,273	2,0538	1,605	0,111
	자가용승용차	165	9,345	3,1325		
	영업용택시	53	8,755	3,0186		
	승합자동차	40	10,600	3,4848		
	버스	36	9,722	2,5367		
	일반화물자동차	82	9,439	2,7447		
	덤프용화물자동차	21	9,524	3,7897		
	이륜자동차(오토바이)	8	11,750	3,1053		
	특수자동차	14	9,143	2,4450		
	자전거	3	8,667	3,0551		
피고인 차량상황	직진 중	289	9,626	3,2530	1,543	0,163
	우회전 중	38	9,474	2,6987		
	좌회전 중	48	8,875	2,1400		
	후진 중	19	9,789	2,2992		
	진로변경 중	12	8,000	3,8139		
	유턴 중	11	11,273	3,9266		
	기타	8	9,000	2,6186		

*p < 0.05, **p < 0.01, ***p < 0.001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피고인 과실 유형	신호위반	비해당	392	9,362	3,0295	-3,236***	0,001
		해당	40	11,000	3,2344		
	중앙선 침범	비해당	417	9,458	3,0166	-1,993*	0,047
		해당	15	11,067	4,3991		
	속도위반	비해당	404	9,505	2,9876	-0,167	0,868
		해당	28	9,643	4,2879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비해당	428	9,514	3,0587	0,009	0,993
		해당	4	9,500	5,744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비해당	384	9,500	3,1532	-0,265	0,791
		해당	48	9,625	2,4636		
	주취중 또는 약물영향하 운전	비해당	424	9,462	3,0151	-2,551*	0,011
		해당	8	12,250	5,1755		
	전후방주시의무 위반	비해당	54	10,407	3,5899	2,289*	0,023
		해당	378	9,386	2,9861		
	기타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비해당	412	9,476	3,0784	-1,169	0,243
		해당	20	10,300	3,1305		
	일시정지의무 위반	비해당	423	9,508	3,0109	-0,139	0,893
		해당	9	9,778	5,7831		
	서행의무위반	비해당	405	9,575	3,1050	1,607	0,109
		해당	27	8,593	2,5908		
	핸들·제동장치 조작미숙	비해당	371	9,542	3,0519	0,463	0,643
		해당	61	9,344	3,2807		
	역주행	비해당	431	9,508	3,0832	-0,807	0,420
		해당	1	12,000	-		
	교차로통과방법 위반	비해당	430	9,479	3,0087	-1,074	0,477
		해당	2	17,000	9,8995		
안전거리미확보	비해당	428	9,528	3,0838	0,987	0,324	
	해당	4	8,000	2,8284			
졸음운전	비해당	422	9,464	3,0774	-2,175*	0,030	
	해당	10	11,600	2,6331			
정비불량	비해당	431	9,508	3,0832	-0,807	0,420	
	해당	1	12,000	-			

*p < 0.05, **p < 0.01, ***p < 0.001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결과 보고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도로상태	건조	350	9,457	2,9615	1,762	0,136
	비로 미끄러운 상태	39	10,154	4,2891		
	눈으로 빙판길 상태	15	9,867	2,8752		
	안개 등으로 시야불완전	7	6,857	1,0690		
	기타	5	9,600	4,9800		
피해자 유형	도로횡단인	193	8,891	2,6991	2,504**	0,003
	노변통행인	39	9,641	2,5494		
	인도통행인	5	10,000	2,8284		
	피고인 차량 동승자	21	10,190	3,5160		
	피해자 차량운전자	26	11,231	4,7355		
	피해자 차량 동승자	16	11,625	4,2091		
	오토바이 운전자	45	9,556	3,0118		
	오토바이 동승자	4	11,000	6,0000		
	자전거 운전자	38	10,105	2,2275		
	순수레 끄는 사람	5	8,000	2,8284		
	농기계 운전자	2	10,000	0,0000		
	수신호중인자	1	10,000	-		
	기타	32	9,375	2,7562		
피해자 과실유무	없음	197	10,396	3,2239	5,973***	0,000
	있음	211	8,616	2,7911		
제3자의 과실	없음	382	9,372	2,9843	0,031	0,975
	있음	6	9,333	2,7325		
입원관계	없음	4	10,500	5,2599	0,333	0,852
	1주 이하	1	8,000	-		
	2주 이하	1	8,000	-		
	4주 초과	1	12,000	-		
	기간확인 불가	14	12,571	5,8404		
후유장애유무	없음	6	12,000	6,4498	-0,320	0,758
	있음	3	13,333	4,1633		

*p < 0.05, **p < 0.01, ***p < 0.001

● 피고인 특성 및 피해자 특성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보험 가입 여부	대인대물종합보험	403	9,474	3,1324	0,403	0,751
	대인종합보험	1	12,000	-		
	책임보험	19	9,684	2,5178		
	무보험	2	11,000	1,4142		
피해자 성별	남성	257	9,525	3,0632	0,093	0,926
	여성	175	9,497	3,1181		
피고인과의 관계	배우자(사실혼 포함)	2	9,000	1,4142	1,949	0,052
	기타 친인척	2	16,000	11,3137		
	사제관계	1	12,000	-		
	이웃	2	9,000	4,2426		
	친구	6	11,667	5,4283		
	직장관계	3	12,000	0,0000		
	아는 사람	11	9,455	2,0181		
	모르는 사람	395	9,423	3,0111		
장애인 여부	불해당	306	9,693	3,1566	1,168	0,244
	해당	1	6,000	-		

*p < 0.05, **p < 0.01, ***p < 0.001

● 피해 회복 및 범행 후 정황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합의 여부	전부 합의	298	9,295	2,9175	7,655***	0,001
	일부 합의	12	12,667	5,6138		
	미합의	109	9,798	3,0300		
공탁 여부	없음	247	9,020	3,0596	-2,679**	0,008
	있음	92	10,043	3,3014		
피해자의 처벌의사	전부 처벌 불원	274	9,204	2,8533	5,455**	0,005
	일부 처벌 불원	13	12,000	5,7155		
	전부 처벌 원함	83	9,711	3,4235		

*p < 0.05, **p < 0.01, ***p < 0.001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피해 회복 노력 여부	없음	29	10,000	3,2950	1,092	0,276
	있음	335	9,343	3,0912		

*p < 0.05, **p < 0.01, ***p < 0.001

2) 교통사고 치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 변호인 구분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변호인	사선	31	7,452	1,9636	3,927*	0,020
	국선	138	6,464	1,7682		
	없음	301	6,648	1,7556		

*p < 0.05, **p < 0.01, ***p < 0.001

● 피고인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국적	내국인	469	6,648	1,7861	0,363	0,717
	외국인	1	6,000	-		
성별	남자	415	6,670	1,7989	0,770	0,442
	여자	55	6,473	1,6761		
연령	20세 미만	6	6,000	1,2649	0,325	0,924
	30세 미만	49	6,531	1,6215		
	40세 미만	78	6,615	1,8603		
	50세 미만	137	6,628	1,7615		
	60세 미만	129	6,791	1,8229		
	70세 미만	54	6,574	1,8693		
70세 이상	17	6,647	1,8351			

*p < 0.05, **p < 0.01, ***p < 0.001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직업	무직	81	6,914	2,1107	1,087	0,366
	기업 대표이사	1	8,000	-		
	회사원	95	6,495	1,5497		
	자영업(점포업자 등)	39	6,846	2,1094		
	교육직(교사·강사 등)	2	6,000	0,0000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1	4,000	-		
	기타 전문직	2	9,000	4,2426		
	농업·어업·임업·축산업	12	6,167	1,8007		
	학생	7	6,286	2,1381		
	주부	13	6,462	1,3914		
	공원	1	6,000	-		
	운전사	128	6,797	1,7719		
	일용직(노무종사자)	39	6,487	1,5873		
	종업원	30	6,000	0,9097		
	종교인	1	6,000	-		
	기타	18	6,722	1,9943		
학력	무학	4	7,250	2,2174	0,392	0,854
	초등학교	39	6,590	1,8739		
	중학교	67	6,657	1,9737		
	고등학교	157	6,682	1,8744		
	대학교	91	6,407	1,6864		
	대학원	1	6,000	-		
주거	주거 부정	5	5,600	1,6733	-1,310	0,191
	주거 일정	448	6,643	1,7715		
월 수입	없음	67	6,313	1,8846	1,046	0,399
	100만 원 이하	67	6,716	1,8894		
	200만 원 이하	149	6,698	1,9091		
	300만 원 이하	30	6,333	1,2954		

*p < 0.05, **p < 0.01, ***p < 0.001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결과 보고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400만 원 이하	4	5,250	0,9574	1,046	0,399
	500만 원 이하	3	6,000	0,0000		
	1,000만 원 이하	1	6,000	-		
	1,000만 원 초과	1	4,000	-		
재산 여부	없음	125	6,696	1,9602	0,701	0,484
	있음	194	6,546	1,7953		
혼인관계	미혼	97	6,567	1,7848	0,033	0,998
	기혼(사실혼 포함)	239	6,573	1,8016		
	이혼	44	6,659	2,2093		
	사별	7	6,571	2,5071		
	별거(기출)	7	6,429	1,9881		
부양가족	없음	89	6,404	1,7433	-0,833	0,405
	있음	303	6,587	1,8445		
건강상태	양호	349	6,633	1,8266	0,121	0,886
	중증	14	6,857	1,7033		
	경증	52	6,596	1,4985		
사회적 유대 관계	높음	10	7,800	2,7406	2,371	0,098
	보통	98	6,929	1,7126		
	낮음	1	10,000	-		
장애인 유형	불해당	449	6,628	1,7859	-1,053	0,293
	해당	21	7,048	1,7457		
범행 당시 심신장애 여부	심신미약	1	8,000	-	0,576	0,448
	없음	469	6,644	1,7852		
	합계	470	6,647	1,7844		

*p < 0.05, **p < 0.01, ***p < 0.001

● 전과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초범 여부	아님	306	6,735	1,8639	1,534	0,126
	해당	164	6,482	1,6184		
이종 전과 여부	없음	231	6,442	1,5975	-2,473*	0,014
	있음	239	6,845	1,9308		
누범 전과	없음	469	6,648	1,7861	0,363	0,717
	있음	1	6,000	-		
집행유예 중 여부	아님	465	6,634	1,7677	-0,858	0,439
	해당	5	7,800	3,0332		

*p < 0.05, **p < 0.01, ***p < 0.001

● 경합범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부	아님	427	6,670	1,7765	0,880	0,380
	해당	43	6,419	1,8674		

*p < 0.05, **p < 0.01, ***p < 0.001

● 공범 및 범행 후 정황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자수·자복 여부	없음	360	6,506	1,6706	1,244	0,214
	있음	7	5,714	1,3801		
자백 여부	전부 자백	430	6,623	1,7942	0,084	0,920
	일부 자백	12	6,417	0,9962		
	전부 부인	15	6,667	1,9518		
반성 여부	없음	5	6,400	0,8944	-0,501	0,617
	있음	226	6,796	1,7621		

*p < 0.05, **p < 0.01, ***p < 0.001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결과 보고

● 객관적 인자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사고유형	주·정차중인 차량 충돌	8	7,500	3,1623	2,109*	0,023
	교차차량과 충돌	97	6,711	1,7734		
	선행차량과 충돌	14	5,857	2,4133		
	대향차량과 충돌	82	6,622	1,6074		
	병행차량과 충돌	14	6,857	2,1788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충돌	7	6,000	1,6330		
	사람을 침	221	6,570	1,5957		
	도로시설물과 충돌	6	9,333	3,2660		
	자동차 전복	1	8,000	-		
	승객추락	8	6,750	2,3146		
	기타	8	6,500	1,7728		
피고인 차량종류	자가용승용차	203	6,650	1,7718	1,476	0,154
	영업용택시	90	6,800	1,7366		
	승합자동차	30	6,633	1,6291		
	버스	28	6,929	2,3871		
	일반화물자동차	62	6,226	1,6238		
	덤프용화물 자동차	9	8,000	1,7321		
	이륜자동차(오토바이)	35	6,200	1,2788		
	특수자동차	1	8,000	-		
	자전거	6	6,333	2,9439		
	기타	2	7,000	1,4142		
피고인 차량상황	직진 중	293	6,747	1,8848	0,694	0,655
	우회전 중	25	6,320	1,3454		
	좌회전 중	92	6,489	1,7509		
	후진 중	11	6,909	1,3751		
	진로변경 중	6	6,000	1,2649		
	유턴 중	30	6,400	1,3287		
	기타	8	6,500	1,3093		
신호위반	비해당	302	6,619	1,7758	-0,449	0,653
	해당	168	6,696	1,8041		

*p < 0.05, **p < 0.01, ***p < 0.001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피고인 과실 유형	중앙선 침범	비해당	414	6,684	1,8117	1,364	0,176
		해당	56	6,375	1,5558		
	속도위반	비해당	454	6,595	1,7412	-3,409***	0,001
		해당	16	8,125	2,3629		
	앞지르기 · 끼어들기 위반	비해당	466	6,652	1,7863	0,728	0,467
		해당	4	6,000	1,6330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비해당	411	6,689	1,8241	1,582	0,117
		해당	59	6,356	1,4594		
	무면허운전	비해당	457	6,637	1,7694	-0,723	0,470
		해당	13	7,000	2,3094		
	주취중 또는 약물 영향하 운전	비해당	446	6,650	1,7797	0,179	0,858
		해당	24	6,583	1,9092		
	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 위반	비해당	463	6,648	1,7944	0,112	0,910
		해당	7	6,571	0,9759		
	전후방주시 의무 위반	비해당	147	6,354	1,5607	-2,579*	0,010
		해당	323	6,780	1,8645		
	기타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비해당	452	6,642	1,8041	-0,317	0,751
		해당	18	6,778	1,2154		
	일시정지 의무 위반	비해당	457	6,650	1,7820	0,222	0,825
		해당	13	6,538	1,9415		
	서행의무위반	비해당	443	6,664	1,7904	0,829	0,408
		해당	27	6,370	1,6904		
	핸들 · 제동장치 조작미숙	비해당	444	6,617	1,7707	-1,493	0,136
		해당	26	7,154	1,9737		
	역주행	비해당	467	6,647	1,7838	-0,019	0,985
		해당	3	6,667	2,3094		
	교차로통과 방법 위반	비해당	464	6,651	1,7791	0,433	0,665
		해당	6	6,333	2,3381		
안전거리미확보	비해당	463	6,648	1,7701	0,073	0,944	
	해당	7	6,571	2,7603			
졸음운전	비해당	469	6,648	1,7861	0,363	0,717	
	해당	1	6,000	-			

*p < 0.05, **p < 0.01, ***p < 0.001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결과 보고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도로상태	건조	396	6,535	1,6903	1,430	0,223
	비로 미끄러운 상태	40	7,050	2,2182		
	눈으로 빙판길 상태	8	7,500	1,7728		
	안개 등으로 시야불완전	3	6,667	3,0551		
	기타	8	7,000	1,5119		
피해자 유형	도로횡단인	172	6,517	1,5801	1,335	0,202
	노변통행인	8	7,750	2,4928		
	인도통행인	16	6,875	1,2583		
	피고인 차량 동승자	25	7,280	2,3544		
	피해자 차량운전자	84	6,857	2,1179		
	피해자 차량 동승자	28	6,536	1,4525		
	오토바이 운전자	82	6,402	1,6319		
	오토바이 동승자	7	7,143	2,2678		
	자전거 운전자	19	5,947	1,5083		
	손수레 끄는 사람	1	8,000	-		
	수신호 증인자	1	6,000	-		
	기타	19	6,842	2,0619		
피해자 과실유무	없음	339	6,543	1,7098	-1,000	0,318
	있음	91	6,747	1,8110		
제3자의 과실	없음	416	6,567	1,7217	-1,083	0,280
	있음	6	7,333	1,6330		
입원관계	없음	8	6,500	1,7728	1,145	0,336
	1주 이하	2	8,000	2,8284		
	2주 이하	3	6,000	0,0000		
	4주 이하	4	5,000	2,0000		
	4주 초과	132	6,788	2,0304		
	기간확인 불가	246	6,589	1,7303		
후유장애유무	없음	142	6,345	1,6803	-3,821***	0,000
	있음	65	7,492	2,1369		

*p < 0.05, **p < 0.01, ***p < 0.001

● 피고인 특성 및 피해자 특성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보험 가입 여부	대인대물종합보험	382	6,673	1,8244	0,168	0,845
	책임보험	57	6,526	1,5365		
	무보험	22	6,682	1,8358		
피해자 성별	남성	286	6,703	1,8635	1,044	0,297
	여성	182	6,533	1,6137		
피고인과의 관계	기타 친인척	1	4,000	-	1,396	0,196
	연인관계	1	6,000	-		
	이웃	1	6,000	-		
	친구	2	7,000	1,4142		
	직장관계	3	9,333	2,3094		
	거래처관계	1	6,000	-		
	아는 사람	10	6,200	1,4757		
	모르는 사람	442	6,627	1,7686		
장애인 여부	불해당	379	6,683	1,7668	-0,713	0,476
	해당	9	7,111	2,2608		

*p < 0.05, **p < 0.01, ***p < 0.001

● 피해 회복 및 범행 후 정황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합의 여부	전부 합의	173	6,364	1,6283	4,659*	0,010
	일부 합의	39	7,231	2,0321		
	미합의	247	6,749	1,8484		
공탁 여부	없음	271	6,520	1,6729	-2,698**	0,008
	있음	132	7,068	2,0197		

*p < 0.05, **p < 0.01, ***p < 0.001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피해자의 처벌의사	전부 처벌 불원	180	6,306	1,5358	5,672**	0,004
	일부 처벌 불원	43	7,163	2,1036		
	전부 처벌 원함	179	6,827	2,0274		
피해 회복 노력 여부	없음	95	6,474	1,9342	-0,944	0,346
	있음	312	6,673	1,7612		

*p < 0.05, **p < 0.01, ***p < 0.001

3)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변호인 유무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변호인	사선	19	31,579	2,7145	3,398*	0,045
	국선	15	30,000	4,5356		
	없음	4	23,750	14,4309		

*p < 0.05, **p < 0.01, ***p < 0.001

● 피고인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성별	남자	34	30,147	6,1503	0,047	0,963
	여자	4	30,000	0,0000		
연령	20세 미만	1	24,000	-	0,512	0,795
	30세 미만	6	31,000	2,4495		
	40세 미만	9	28,889	8,2529		
	50세 미만	6	28,500	7,0356		
	60세 미만	6	32,000	3,0984		
	70세 미만	8	30,750	5,9462		
	70세 이상	2	33,000	4,2426		

*p < 0.05, **p < 0.01, ***p < 0.001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학력	무학	1	30,000	-	0,914	0,487
	초등학교	5	30,000	7,3485		
	중학교	2	22,500	10,6066		
	고등학교	11	28,545	7,5414		
	대학교	12	30,500	1,7321		
	대학원	1	36,000	-		
직업	무직	5	31,200	2,6833	0,778	0,638
	회사원	8	31,500	2,7775		
	자영업(점포업자 등)	6	33,000	3,2863		
	교육직(교사·강사 등)	1	30,000	-		
	주부	2	30,000	0,0000		
	운전사	4	24,750	9,9121		
	일용직(노무증사자)	4	27,500	13,3041		
	종업원	2	27,000	4,2426		
	종교인	2	33,000	4,2426		
기타	4	30,000	0,0000			
주거	주거 부정	1	36,000	-	-	-
	주거 일정	34	29,794	5,9685		
재산 여부	없음	16	29,813	4,9561	-0,625	0,538
	있음	12	31,000	5,0091		
부양가족	없음	11	30,000	2,6833	0,265	0,793
	있음	22	29,409	7,1091		
건강상태	양호	30	30,667	5,2347	5,114*	0,030
	경증	5	24,600	7,4699		
사회적 유대 관계	높음	4	30,000	0,0000	0,009	0,925
	보통	8	30,375	7,5958		
장애인 유형	불해당	35	30,143	6,0592	0,040	0,968
	해당	3	30,000	0,0000		

*p < 0.05, **p < 0.01, ***p < 0.001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결과 보고

● 전과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초범 여부	아님	23	30,391	5,1411	0,337	0,738
	해당	15	29,733	6,8813		
동일 전과 여부	없음	22	29,682	6,7569	-0,554	0,583
	있음	16	30,750	4,3128		
이종 전과 여부	없음	21	30,095	5,9153	-0,042	0,967
	있음	17	30,176	5,8549		

*p < 0.05, **p < 0.01, ***p < 0.001

● 경합범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부	아님	36	30,139	5,9721	0,032	0,974
	해당	2	30,000	0,0000		

*p < 0.05, **p < 0.01, ***p < 0.001

● 공범 및 범행 후 정황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자수·자복 여부	없음	20	30,100	6,0689	1,277	0,213
	있음	9	27,000	6,0000		
자백 여부	전부 자백	25	29,000	6,5955	0,946	0,399
	일부 자백	6	31,000	2,4495		
	전부 부인	4	33,000	3,4641		
반성 여부	없음	1	30,000	-	-	-
	있음	19	30,105	5,9057		

*p < 0.05, **p < 0.01, ***p < 0.001

● 주관적 인자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범행 동기	두려움	비해당	16	29,750	6,2769	0,112	0,911
		해당	19	29,526	5,5012		
	음주, 무면허운전 은폐	비해당	31	29,581	6,1524	-0,135	0,894
		해당	4	30,000	0,0000		
	특별한 동기 없음	비해당	23	29,348	4,7826	-0,393	0,697
		해당	12	30,167	7,5538		

*p < 0.05, **p < 0.01, ***p < 0.001

● 객관적 인자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범행장소	일반차도	19	30,105	6,2352	0,111 8,966	0,998 0,000
	자동차 전용도로	1	30,000	-		
	주택가도로	6	29,500	7,6877		
	신호등 있는 교차로	1	30,000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3	30,000	0,000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	30,000	-		
	인도	1	36,000	-		
	학교 앞	1	30,000	-		
	기타	5	30,000	7,3485		
사고유형	병행차량과 충돌	1	8,000	-	3,170	0,027
	사람을 침	34	30,971	4,5957		
	승객추락	1	24,000	-		
	기타	2	30,000	0,0000		
피고인 차량종류	자가용승용차	21	29,810	5,4371	3,170	0,027
	영업용택시	2	24,000	8,4853		
	승합자동차	3	32,000	3,4641		
	일반화물자동차	8	33,750	3,1053		
	이륜자동차(오토바이)	3	23,000	7,5498		

*p < 0.05, **p < 0.01, ***p < 0.001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결과 보고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피고인 차량상황	직진 중	32	30,656	4,8033	2,428	0,103			
	우회전 중	2	33,000	4,2426					
	좌회전 중	4	24,500	11,0000					
피고인 과실 유형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비해당	37	30,135	5,8886	0,040	0,968		
		해당	1	30,000	-				
	무면허운전	비해당	37	30,135	5,8886				
		해당	1	30,000	-				
	주취중 또는 약물영향하 운전	비해당	35	30,143	6,0592				
		해당	3	30,000	0,0000				
	전후방주시의무 위반	비해당	3	28,000	3,4641			-0,657	0,515
		해당	35	30,314	5,9645				
	기타 행사보호의무 위반	비해당	30	28,967	5,8750			-2,569*	0,014
		해당	8	34,500	2,7775				
	서행의무위반	비해당	36	30,139	5,7973			0,032	0,974
		해당	2	30,000	8,4853				
	핸들·제동장치 조작미숙	비해당	34	30,147	6,1503			0,047	0,963
		해당	4	30,000	0,0000				
	안전거리미확보	비해당	36	30,472	5,5984			1,563	0,127
		해당	2	24,000	8,4853				
	도로상태	건조	33	30,606	5,6233			1,705	0,200
		비로 미끄러운 상태	5	27,000	6,7082				
피해자 유형	도로횡단인	18	30,667	4,0584	4,320**	0,003			
	노변통행인	5	31,200	2,6833					
	인도통행인	1	36,000	-					
	피해자 차량운전자	1	8,000	-					
	오토바이 동승자	1	24,000	-					
	자전거 운전자	1	30,000	-					
	기타	10	30,900	6,3325					
제3자의 과실	없음	32	30,719	5,8267	1,555	0,130			
	있음	2	24,000	8,4853					

*p < 0.05, **p < 0.01, ***p < 0.001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도주의 정황	병원 등에서 치료받게 한 후 도주	2	30,000	0.0000	0,000	1,000
	일단 정착하여 피해 확인 후 도주	5	30,000	4,2426		
	사고확인 없이 바로 도주	26	29,962	6,7556		

*p < 0.05, **p < 0.01, ***p < 0.001

● 피고인 및 피해자 특성 및 피해 회복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피고인 특성	대인대물종합보험	30	29,567	6,0554	0,308	0,737
	책임보험	3	30,000	6,0000		
	무보험	2	33,000	4,2426		
피해자 성별	남성	27	29,519	6,6064	-1,020	0,315
	여성	11	31,636	2,8026		
피고인과 관계	친구	1	24,000	-	0,530	0,593
	아는 사람	1	30,000	-		
	모르는 사람	35	30,143	5,8819		
장애인 여부	불해당	29	29,552	6,3672	-	-
	해당	1	30,000	-		
합의 여부	전부 합의	29	30,103	4,7082	0,003	0,958
	미합의	9	30,222	8,8569		
공탁 여부	없음	25	29,960	6,8949	-0,014	0,989
	있음	6	30,000	3,7947		
피해자 처벌의사	전부 처벌 불원	29	30,103	4,7082	0,072	0,790
	전부 처벌 원함	7	29,429	9,9139		
피해 회복 노력 여부	없음	3	36,000	0,0000	1,871	0,071
	있음	31	29,387	6,0370		

*p < 0.05, **p < 0.01, ***p < 0.001

● 범행 후 정황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도주 후 복귀 여부	없음	28	29.857	5.7071	0,567	0,575
	있음	5	28,200	7,8230		
복귀 후 구호조치	없음	2	33,000	4,2426	1,300	0,323
	있음	2	22,500	10,6066		
범행은폐(시도)	없음	23	29,435	6,1999	-	-
	있음	1	24,000	-		

*p < 0.05, **p < 0.01, ***p < 0.001

4)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변호인 구분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변호인	사선	32	9,188	3,9303	1,674	0,190
	국선	68	8,500	3,4963		
	없음	112	8,107	2,2912		

*p < 0.05, **p < 0.01, ***p < 0.001

● 피고인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국적	내국인	209	8,383	3,0203	-0,542	0,588
	외국인	3	9,333	2,3094		
성별	남자	197	8,406	3,0165	0,173	0,863
	여자	15	8,267	3,0111		

*p < 0.05, **p < 0.01, ***p < 0.001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연령	20세 미만	1	8,000	-	0,357	0,905
	30세 미만	42	8,286	2,2770		
	40세 미만	44	8,409	2,7477		
	50세 미만	67	8,119	3,3553		
	60세 미만	45	8,756	3,5237		
	70세 미만	10	8,600	2,1187		
	70세 이상	3	10,000	3,4641		
학력	무학	1	6,000	-	0,861	0,509
	초등학교	15	8,533	2,3258		
	중학교	25	9,360	2,8705		
	고등학교	80	8,875	3,8693		
	대학교	48	8,250	2,0885		
	대학원	3	6,667	1,1547		
직업	무직	45	8,978	2,9115	0,877	0,590
	회사원	53	7,962	2,2357		
	자영업(점포업자 등)	21	9,619	6,1845		
	교육직(교사·강사 등)	3	8,667	3,0551		
	대학(전문대 포함) 교수	1	8,000	-		
	기타 전문직	1	6,000	-		
	농업·어업·임업·축산업	11	8,909	2,2563		
	군인	1	12,000	-		
	기타 공무원	1	8,000	-		
	학생	4	6,500	1,0000		
	주부	2	7,000	1,4142		
	공원	2	6,000	0,0000		
	운전사	14	7,857	2,1432		
	일용직(노무종사자)	24	8,250	2,1518		
	종업원	11	8,545	2,5442		
	기타	18	7,778	2,2637		

*p < 0.05, **p < 0.01, ***p < 0.001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결과 보고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주거	주거 부정	2	7,000	1,4142	-0.657	0,512
	주거 일정	184	8,467	3,1465		
월 수입	없음	27	8,741	2,9430	1,017	0,410
	100만 원 이하	25	8,560	2,4846		
	200만 원 이하	68	8,176	2,1227		
	300만 원 이하	16	10,000	5,9330		
	400만 원 이하	3	9,333	2,3094		
	1,000만 원 이하	1	8,000	-		
재산 여부	없음	64	8,969	3,7031	0,861	0,391
	있음	74	8,514	2,1974		
혼인관계	미혼	67	8,567	2,4816	0,462	0,764
	기혼(사실혼 포함)	84	8,357	2,9804		
	이혼	24	9,083	5,0036		
	동거	1	6,000	-		
	별거(가출)	7	8,000	2,3094		
부양가족	없음	52	8,538	2,2445	0,098	0,922
	있음	131	8,489	3,3931		
건강 상태	양호	165	8,291	2,6892	4,154*	0,043
	경증	28	9,571	4,7875		
사회적 유대 관계	높음	10	8,800	3,7947	0,683	0,416
	보통	20	7,900	2,1981		
장애인 유형	불해당	202	8,366	3,0329	-0,649	0,517
	해당	10	9,000	2,5386		
마약복용 경력	없음	211	8,379	3,0061	-	-
	있음	1	12,000	-		
범행 당시 심신장애 여부	심신미약	2	7,000	1,4142	0,433	0,511
	없음	210	8,410	3,0189		

*p < 0.05, **p < 0.01, ***p < 0.001

● 전과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초범 여부	아님	152	8,605	3,2063	1,616	0,108
	해당	60	7,867	2,3826		
동종 전과 여부	없음	99	7,879	2,4878	-2,369*	0,019
	있음	113	8,850	3,3467		
이종 전과 여부	없음	99	7,980	2,2767	-1,949	0,053
	있음	113	8,761	3,4981		
누범 전과	없음	210	8,305	2,6217	-0,808	0,567
	있음	2	18,000	16,9706		
집행유예 중 여부	아님	209	8,402	3,0241	0,229	0,819
	해당	3	8,000	2,0000		

*p < 0.05, **p < 0.01, ***p < 0.001

● 경합범 구분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부	아님	146	8,301	3,1544	-0,682	0,496
	해당	66	8,606	2,6711		
제37조 후단 전과 여부	없음	211	8,379	3,0061	-	-
	있음	1	12,000	-		

*p < 0.05, **p < 0.01, ***p < 0.001

● 공범 및 범행 후 정황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자수·자복 여부	없음	146	8,493	3,1737	1,227	0,222
	있음	20	7,600	1,9029		
자백 여부	전부 자백	187	8,310	2,8681	0,664	0,516
	일부 자백	10	8,800	2,3476		
	전부 부인	13	9,231	5,0026		
반성 여부	없음	6	8,667	2,4221	0,329	0,743
	있음	100	8,360	2,2089		

*p < 0.05, **p < 0.01, ***p < 0.001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결과 보고

● 주관적 인자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범행 동기 (도주)	질병 등 응급상황	비해당	208	8,385	3,0082	-1,199	0,232
		해당	1	12,000	-		
	두려움	비해당	112	8,250	2,5627	-0,783	0,435
		해당	97	8,577	3,4636		
	음주, 무면허운전 은폐	비해당	134	8,403	3,3248	0,007	0,995
		해당	75	8,400	2,3710		
	무보험, 피해배상 회피	비해당	208	8,413	3,0140	0,799	0,425
		해당	1	6,000	-		
	특별한 동기 없음	비해당	157	8,369	3,0198	-0,270	0,787
		해당	52	8,500	3,0130		

*p < 0.05, **p < 0.01, ***p < 0.001

● 객관적 인자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범행장소	일반차도	133	8,602	3,3933	0,928	0,495
	자동차 전용도로	2	9,000	4,2426		
	고속도로	3	9,333	3,0551		
	주택가도로	13	7,231	2,3859		
	신호등 있는 교차로	30	8,200	1,8458		
	신호등 없는 교차로	5	8,800	3,0332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13	8,923	2,3966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5	7,200	1,0954		
	기타	5	6,000	0,0000		
사고유형	주·정차중인 차량 충돌	21	7,810	1,9905	1,129	0,344
	교차차량과 충돌	21	7,810	1,7782		
	선행차량과 충돌	23	8,348	2,9941		
	대향차량과 충돌	27	9,556	4,5178		
	병행차량과 충돌	16	8,000	2,5298		

*p < 0.05, **p < 0.01, ***p < 0.001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또는T	p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충돌	13	7,692	2,1364	1,129	0,344	
	사람을 침	85	8,659	3,0766			
	자동차 전복	1	6,000	-			
	승객추락	1	6,000	-			
	기타	4	6,500	1,0000			
피고인 차량종류	자가용승용차	147	8,408	3,0154	0,272	0,950	
	영업용택시	9	7,778	2,5386			
	승합자동차	18	8,111	2,1113			
	버스	1	6,000	-			
	일반화물자동차	28	8,786	3,8235			
	이륜자동차(오토바이)	7	8,286	2,6904			
	기타	1	8,000	-			
피고인 차량상황	직진 중	146	8,589	2,8105	1,054	0,391	
	우회전 중	9	8,444	2,4037			
	좌회전 중	27	7,778	1,6946			
	후진 중	5	6,400	0,8944			
	진로변경 중	13	8,154	2,7642			
	유턴 중	7	9,714	8,9762			
	기타	3	6,667	1,1547			
피고인 과실유형	신호위반	비해당	192	8,302	2,6943	-1,415	0,159
		해당	20	9,300	5,1616		
	중앙선 침범	비해당	182	8,253	2,6927	-1,718	0,087
		해당	30	9,267	4,4407		
	속도위반	비해당	209	8,383	3,0203	-0,542	0,588
		해당	3	9,333	2,3094		
	앞지르기 · 끼어 들기 위반	비해당	208	8,346	2,9481	-1,756	0,081
		해당	4	11,000	5,2915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비해당	195	8,359	3,0687	-0,610	0,543
		해당	17	8,824	2,2426		
	무면허운전	비해당	203	8,404	3,0531	0,177	0,860
		해당	9	8,222	1,8559		

*p < 0.05, **p < 0.01, ***p < 0.001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결과 보고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또는T	p
주취중 또는 약물 영향하 운전	비해당	169	8,343	3,0238	-0.508	0,612
	해당	43	8,605	2,9772		
전후방주시 의무 위반	비해당	39	8,615	3,9777	0,503	0,616
	해당	173	8,347	2,7568		
기타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비해당	208	8,365	3,0234	-1,077	0,283
	해당	4	10,000	1,6330		
일시정지 의무 위반	비해당	210	8,371	3,0112	-1,231	0,220
	해당	2	11,000	1,4142		
서행의무위반	비해당	204	8,363	3,0247	-0,817	0,415
	해당	8	9,250	2,6049		
핸들·제동장치 조작미숙	비해당	180	8,389	3,1292	-0,084	0,933
	해당	32	8,438	2,2567		
역주행	비해당	210	8,400	3,0170	0,187	0,852
	해당	2	8,000	2,8284		
안전거리미확보	비해당	201	8,438	3,0671	0,860	0,391
	해당	11	7,636	1,5015		
졸음운전	비해당	202	8,426	3,0448	0,641	0,522
	해당	10	7,800	2,2010		
도로상태	건조	177	8,328	2,8294	5,990***	0,000
	비로 미끄러운 상태	21	8,095	3,0644		
	눈으로 빙판길 상태	1	12,000	-		
	안개 등으로 시야불완전	7	8,286	2,1381		
	기타	2	18,000	8,4853		
피해자 유형	도로횡단인	39	8,513	2,3269	2,983**	0,002
	노변통행인	21	7,619	2,1558		
	인도통행인	1	12,000	-		
	피해자 차량운전자	102	7,863	1,9551		
	피해자 차량 동승자	11	8,545	2,0181		
	오토바이 운행자	8	10,500	8,3324		
	자전거 운행자	4	7,500	1,9149		
	손수레 끄는 사람	3	11,333	1,1547		

*p < 0.05, **p < 0.01, ***p < 0.001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또는T	p
	농기계 운전자	1	12,000	-	2,983**	0,002
	수신호증인자	1	6,000	-		
	기타	17	10,941	5,1048		
제3자의 과실	없음	194	8,412	3,0734	0,134	0,894
	있음	1	8,000	-		
피해자 수	상해	211	8,294	2,6202	-8,264***	0,000
	사망	1	30,000	-		
도주의 상황	병원 등에서 치료받게 한 후 도주	3	6,667	1,1547	1,283	0,273
	현장에서 인적사항 알려준 후 도주	2	6,000	0,0000		
	피해자와 대화 중 도주	22	7,636	2,1054		
	일단 정차하여 피해 확인 후 도주	22	7,727	2,0744		
	사고확인 없이 바로 도주	147	8,694	3,3158		
	기타	2	7,000	1,4142		
입원관계	없음	36	8,167	2,2615	0,674	0,671
	1주 이하	2	9,000	4,2426		
	2주 이하	6	7,667	2,3381		
	3주 이하	2	8,000	2,8284		
	4주 이하	3	7,333	1,1547		
	4주 초과	17	9,529	3,2810		
	기간확인 불가	86	8,465	2,8889		
후유장애유무	없음	96	8,375	2,2907	-0,800	0,453
	있음	7	9,714	4,3861		

*p < 0.05, **p < 0.01, ***p < 0.001

● 피고인 및 피해자 특성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피고인 특성	대인대물중합보험	181	8.354	3.1353	0.218	0.804
	책임보험	19	8.421	2.1684		
	무보험	10	9.000	1.9437		
피해자 성별	남성	143	8.294	3.0485	-0.713	0.476
	여성	69	8.609	2.9367		
피고인과의 관계	이웃	2	8.000	2.8284	0.034	0.854
	모르는 사람	208	8.394	3.0166		

*p < 0.05, **p < 0.01, ***p < 0.001

● 피해회복 및 범행 후 정황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합의 여부	전부 합의	133	8.286	3.0465	0.219	0.804
	일부 합의	10	8.600	2.3190		
	미합의	67	8.567	3.0512		
공탁 여부	없음	122	8.672	3.4364	0.477	0.634
	있음	29	8.345	2.7810		
피해자의 처벌 의사	전부 처벌 불원	139	8.360	3.0193	0.195	0.823
	일부 처벌 불원	11	8.545	2.2074		
	전부 처벌 원함	51	8.667	3.2660		
피해 회복 노력 여부	없음	38	8.737	3.2689	0.483	0.630
	있음	147	8.463	3.0795		
도주 후 복귀 여부	없음	183	8.536	3.1164	1.638	0.103
	있음	15	7.200	1.6562		
복귀 후 구호조치	없음	8	7.000	1.0690	-0.491	0.669
	있음	3	8.000	3.4641		
범행은폐 (시도)	없음	152	8.329	2.7278	-0.694	0.495
	있음	21	9.143	5.2753		

*p < 0.05, **p < 0.01, ***p < 0.001

5)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사망)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사건의 수가 4건으로 분석을 하기에 적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

6) 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상해)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사건의 수가 4건으로 분석을 하기에 적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

7) 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1)

● 변호인 구분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변호인	사선	14	10,429	4,7832	17,428***	0,000
	국선	44	8,818	3,8656		
	없음	148	7,014	1,6246		
	합계	206	7,631	2,7550		

*p < 0.05, **p < 0.01, ***p < 0.001

● 피고인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국적	내국인	205	7,649	2,7500	1,324	0,187
	외국인	1	4,000	-		
성별	남자	191	7,728	2,8227	1,807	0,072
	여자	15	6,400	1,1212		
연령	30세 미만	36	8,333	3,6253	1,401	0,235
	40세 미만	57	7,158	2,3283		
	50세 미만	65	7,754	2,8615		
	60세 미만	39	7,282	1,6214		
	70세 미만	9	8,444	3,9721		

*p < 0.05, **p < 0.01, ***p < 0.001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결과 보고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학력	초등학교	21	7,238	1,8413	0.778	0.541
	중학교	20	8,600	3,4397		
	고등학교	66	7,636	2,8046		
	대학교	57	7,544	2,5640		
	대학원	3	8,000	0,0000		
직업	무직	34	7,529	2,4647	1.642	0.066
	기업 대표이사	1	6,000	-		
	회사원	59	7,356	2,4195		
	자영업(점포업자 등)	33	8,788	3,3889		
	교육직(교사·강사 등)	2	7,000	1,4142		
	기타 전문직	2	7,000	1,4142		
	농업·어업·임업·축산업	6	7,667	1,5055		
	군인	1	6,000	-		
	학생	1	14,000	-		
	주부	5	6,400	0,8944		
	공원	3	7,333	1,1547		
	운전사	7	8,286	4,5356		
	일용직(노무종사자)	29	6,690	1,6280		
	종업원	10	9,400	4,7188		
	종교인	1	4,000	-		
	기타	12	7,333	2,1462		
주거	주거 부정	3	6,000	2,0000	-1,039	0,300
	주거 일정	193	7,627	2,6975		
월 수입	없음	22	7,364	2,4985	1,483	0,188
	100만 원 이하	29	6,897	1,4722		
	200만 원 이하	68	7,794	2,8732		
	300만 원 이하	18	8,111	3,7241		
	400만 원 이하	2	7,000	1,4142		
	500만 원 이하	2	12,000	0,0000		
	1,000만 원 이하	1	6,000	-		

*p < 0.05, **p < 0.01, ***p < 0.001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재산 여부	없음	53	7,132	2,0572	-1.449	0,150
	있음	87	7,747	2,6379		
혼인관계	미혼	57	7,930	3,0464	1,193	0,314
	기혼(사실혼 포함)	101	7,723	2,7281		
	이혼	14	6,429	2,1018		
	사별	2	7,000	1,4142		
	동거	1	10,000	-		
	별거(가출)	7	6,286	1,3801		
부양가족	없음	43	7,767	2,7675	0,297	0,767
	있음	138	7,623	2,7821		
건강상태	양호	168	7,595	2,7034	1,152	0,318
	중증	7	6,571	1,9024		
	경증	16	8,375	3,0304		
사회적 유대 관계	높음	9	7,111	2,0276	0,788	0,381
	보통	28	7,857	2,2396		
장애인 유형	불해당	202	7,624	2,7746	-0,270	0,788
	해당	4	8,000	1,6330		
정신병력	없음	205	7,629	2,7616	-0,134	0,894
	있음	1	8,000	-		
범행 당시 심신장애 여부	심신미약	14	9,857	4,8016	10,249**	0,002
	없음	192	7,469	2,4875		

*p < 0.05, **p < 0.01, ***p < 0.001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결과 보고

● 전과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초범 여부	아님	172	7,581	2,5705	-0.467	0.643
	해당	34	7,882	3,5825		
동종 전과 여부	없음	63	8,063	3,1514	1,500	0,135
	있음	143	7,441	2,5498		
이종 전과 여부	없음	100	7,480	2,6457	-0.764	0.446
	있음	106	7,774	2,8595		
누범 전과	없음	205	7,649	2,7500	1,324	0,187
	있음	1	4,000	-		
집행유예 중 여부	아님	203	7,665	2,7586	1,459	0,146
	해당	3	5,333	1,1547		

*p < 0.05, **p < 0.01, ***p < 0.001

● 경합범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부	아님	18	7,889	3,2519	0.415	0.679
	해당	188	7,606	2,7115		
제37조 후단 전과 여부	없음	205	7,629	2,7616	-0.134	0.894
	있음	1	8,000	-		

*p < 0.05, **p < 0.01, ***p < 0.001

● 공범 및 범행 후 정황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자백 여부	전부 자백	203	7,576	2,6770	0.050	0.824
	일부 자백	2	8,000	0,0000		
반성 여부	없음	1	8,000	-	-0.005	0.996
	있음	122	8,016	3,1334		

*p < 0.05, **p < 0.01, ***p < 0.001

● 주관적 인자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범행 동기 (도주)	질병 등 응급상황	비해당	7	7.429	0.9759	-2.465*	0.049
		해당	1	10,000	-		
	음주, 무면허운전 은폐	비해당	4	8,500	1,0000	1,964	0,097
		해당	4	7,000	1,1547		
	특별한 동기 없음	비해당	6	7,667	1,5055	-0,297	0,776
		해당	2	8,000	0,0000		
범행 동기 (위험 운전 처상)	경제활동	비해당	193	7,658	2,8113	-0,007	0,994
		해당	6	7,667	2,3381		
	귀가	비해당	74	7,486	2,5868	-0,667	0,506
		해당	125	7,760	2,9138		
	음주 정도 · 무면허 상태 오인	비해당	170	7,718	2,8226	0,725	0,469
		해당	29	7,310	2,6336		
	특별한 동기 없음	비해당	159	7,723	2,8058	0,653	0,514
		해당	40	7,400	2,7624		

*p < 0.05, **p < 0.01, ***p < 0.001

● 객관적 인자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범행장소	일반차도	123	7,301	2,0161	4,675***	0,000
	자동차 전용도로	6	11,667	5,7155		
	고속도로	5	10,800	4,6043		
	주택가도로	3	8,667	3,0551		
	신호등 있는 교차로	41	7,122	2,1470		
	신호등 없는 교차로	11	7,091	1,3751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5	8,800	3,0332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	6,000	-		
	기타	9	10,222	6,0369		

*p < 0.05, **p < 0.01, ***p < 0.001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결과 보고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사고유형	주·정차중인 차량 충돌	43	6,930	2,1536	2,939**	0,002
	교차차량과 충돌	22	8,818	3,2460		
	선행차량과 충돌	25	7,360	2,6281		
	대향차량과 충돌	31	7,419	2,6929		
	병행차량과 충돌	7	8,286	4,3861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충돌	44	6,864	1,6925		
	사람을 침	22	9,273	3,6277		
	도로시설물과 충돌	6	9,333	2,4221		
	자동차 전복	1	6,000	-		
	승객추락	1	14,000	-		
기타	2	7,000	1,4142			
피고인 차량종류	자기용승용차	172	7,465	2,5670	1,226	0,298
	영업용택시	1	6,000	-		
	승합자동차	10	8,000	3,7712		
	일반화물자동차	14	8,143	3,0849		
	이륜자동차(오토바이)	7	9,714	3,9036		
	특수자동차	1	6,000	-		
피고인 차량상황	직진 중	168	7,560	2,6485	1,137	0,342
	우회전 중	10	7,200	1,0328		
	좌회전 중	9	8,444	3,9721		
	후진 중	3	7,333	1,1547		
	진로변경 중	7	8,857	4,1404		
	유턴 중	3	10,667	6,4291		
	기타	2	6,000	0,0000		
신호위반	비해당	192	7,552	2,7204	-1,529	0,128
	해당	14	8,714	3,0991		
중앙선 침범	비해당	178	7,697	2,8795	0,861	0,390
	해당	28	7,214	1,7503		
속도위반	비해당	203	7,547	2,6385	-3,723***	0,000
	해당	3	13,333	5,0332		

*p < 0.05, **p < 0.01, ***p < 0.001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피고인 과실유형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비해당	202	7,614	2,7625	-0,636	0,525
		해당	4	8,500	2,5166		
	무면허운전	비해당	201	7,652	2,7745	0,682	0,496
		해당	5	6,800	1,7889		
	주취중 또는 약물영향하 운전	비해당	44	7,455	2,3768	-0,478	0,633
		해당	162	7,679	2,8539		
	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 위반	비해당	205	7,580	2,6641	-3,902***	0,000
		해당	1	18,000	-		
	전후방주시 의무 위반	비해당	52	7,846	2,7108	0,650	0,516
		해당	154	7,558	2,7747		
	기타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비해당	205	7,620	2,7567	-0,861	0,390
		해당	1	10,000	-		
	일시정지 의무 위반	비해당	204	7,637	2,7660	0,325	0,746
		해당	2	7,000	1,4142		
	서행의무위반	비해당	201	7,632	2,7575	0,025	0,980
		해당	5	7,600	2,9665		
	핸들·제동장치 조작미숙	비해당	171	7,813	2,9125	2,111*	0,036
		해당	35	6,743	1,5405		
	역주행	비해당	202	7,614	2,7625	-0,636	0,525
		해당	4	8,500	2,5166		
교차로통과 방법 위반	비해당	205	7,639	2,7594	0,593	0,554	
	해당	1	6,000	-			
안전거리미확보	비해당	190	7,674	2,8132	0,764	0,446	
	해당	16	7,125	1,9279			
졸음운전	비해당	201	7,572	2,6825	-1,960	0,051	
	해당	5	10,000	4,6904			
도로상태	건조	160	7,488	2,6659	1,321	0,263	
	비로 미끄러운 상태	31	8,581	3,5097			
	눈으로 빙판길 상태	3	6,000	2,0000			
	안개 등으로 시야불완전	5	7,200	1,0954			
	기타	3	8,000	0,0000			

*p < 0.05, **p < 0.01, ***p < 0.001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결과 보고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피해자 유형	도로횡단인	12	8,333	2,0597	6.647***	0,000
	노변통행인	5	10,000	2,4495		
	인도통행인	2	12,000	8,4853		
	피고인 차량 동승자	16	9,750	4,1231		
	피해자 차량운전자	132	7,121	2,2549		
	피해자 차량 동승자	20	7,500	1,2773		
	오토바이 운전자	9	7,333	2,0000		
	오토바이 동승자	2	7,000	1,4142		
	자전거 운전자	1	8,000	-		
	손수레 끄는 사람	1	18,000	-		
피해자 수	농기계 운전자	1	18,000	-	-6.718***	0,000
	상해	193	7,244	2,2145		
입원관계	사망	12	13,833	3,3530	2,613*	0,038
	없음	21	7,524	1,8873		
	1주 이하	2	7,000	1,4142		
	2주 이하	1	10,000	-		
	4주 초과	6	9,667	4,2740		
후유장애유무	기간확인 불가	119	7,025	2,1132	-6.639***	0,000
	없음	98	7,204	1,6179		
	있음	1	18,000	-		

*p < 0.05, **p < 0.01, ***p < 0.001

● 피고인 특성 및 피해자 특성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보험 가입 여부	대인대물종합보험	164	7,732	2,9351	1,469	0,233
	책임보험	21	7,619	1,8568		
	무보험	18	6,556	1,7896		
피해자 성별	남성	157	7,771	2,9523	1,304	0,194
	여성	49	7,184	1,9544		
피고인과의 관계	배우자(사실혼포함)	1	6,000	-	2,988**	0,008
	연인관계	1	6,000	-		
	이웃	1	8,000	-		
	친구	10	10,800	4,6380		
	직장관계	1	6,000	-		
	아는 사람	5	9,200	1,7889		
	모르는 사람	182	7,418	2,5644		

*p < 0.05, **p < 0.01, ***p < 0.001

● 피해 회복 및 범행 후 정황

단위 :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합의 여부	전부 합의	89	8,067	3,3091	2,994	0,052
	일부 합의	20	8,200	3,2379		
	미합의	95	7,158	1,8811		
공탁 여부	없음	161	7,516	2,6247	-1,619	0,139
	있음	10	10,000	4,8074		
피해자의 처벌의사	전부 처벌 불원	100	7,920	3,2277	1,306	0,274
	일부 처벌 불원	23	8,087	3,0438		
	전부 처벌 원함	55	7,200	2,0941		
피해 회복 노력 여부	없음	66	7,182	1,5680	-2,158*	0,032
	있음	120	7,933	3,1748		
범행은폐 (시도)	없음	92	7,304	2,2470	-1,138	0,458
	있음	2	13,000	7,0711		

*p < 0.05, **p < 0.01, ***p < 0.001

2. 형량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 ◆ 교통사고범죄에 있어서 형량에 대한 양형인자들의 반응정도를 알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 ◆ 분석대상 : 확정사건 및 추가 양형자료조사 결과(실형 및 집행유예 본형 포함)

1) 교통사고 치사(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양형인자	B	beta	유의확률	R ²	F(p)
(상수)	5.7597		0.3296	0.348	2.767 (0.001)**
이종 전과 여부	0.5123	0.0800	0.4220		
자백 여부	-1.8457	-0.1417	0.3740		
반성 여부	-4.2123	-0.1331	0.4021		
신호위반	3.1002	0.3081**	0.0058		
중앙선 침범	2.0280	0.1404	0.1603		
속도위반	-1.1967	-0.1235	0.2239		
앞지르기 · 끼어들기 위반	-10.2357	-0.3235*	0.0105		
전후방주시의무 위반	1.6911	0.1681	0.1693		
기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1.6907	0.1370	0.1686		
일시정지의무 위반	-2.0292	-0.1100	0.2312		
졸음운전	4.4112	0.1962	0.0567		
정비불량	2.7824	0.0879	0.3320		
피해자 과실유무	-1.7384	-0.2761**	0.0070		
사망	5.9791	0.1890	0.0504		
보험 가입 여부	1.5990	0.2348	0.0724		
공탁 여부	1.7086	0.2381*	0.0165		

2) 교통사고 치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양형인자	B	beta	유의확률	R ²	F(p)
(상수)	-0,1161		0,9232	0,422	3,598 (0,000)***
연령	0,0356	0,3108**	0,0064		
초범 여부	2,3698	0,7130***	0,0006		
동종 전과 여부	1,3913	0,4363**	0,0052		
이종 전과 여부	1,0079	0,3186*	0,0451		
신호위반	0,9561	0,2974*	0,0210		
중앙선 침범	1,3348	0,3046*	0,0188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3,0411	0,2164	0,0500		
전후방주시의무 위반	0,8703	0,2441*	0,0299		
기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1,1829	0,2269	0,0605		
핸들·제동장치 조작미숙	1,1500	0,2206*	0,0489		
상해	0,2904	0,2195*	0,0388		
후유장애유무	1,1920	0,2971*	0,0300		
피해 회복 노력 여부	1,2388	0,3301**	0,0050		

3)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양형인자	B	beta	유의확률	R ²	F(p)
(상수)	56,0923		0,0000	0,873	9,380 (0,000)***
건강상태	-5,8110	-0,6493	0,0001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부	14,0298	0,5779	0,0335		
자백 여부	4,6220	0,4950	0,0016		
주취중 또는 약물영향하 운전	-12,1220	-0,4993	0,0272		
기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4,9315	-0,2437	0,0984		
핸들·제동장치 조작미숙	10,1845	0,5034	0,0061		
무단횡단	3,8452	0,2650	0,0491		
전방좌우 미확인	-15,9673	-0,4742	0,0492		
노변통행	22,0000	0,6534	0,0001		
피해자의 처벌의사	-10,0461	-1,1225	0,0000		
피해 회복 노력 여부	-28,0000	-1,1533	0,0000		

4)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양형인자	B	beta	유의확률	R ²	F(p)
(상수)	13,6711		0,0000	0,622	6,947 (0,000)***
동종 전과 여부	1,3482	0,2782*	0,0113		
반성 여부	-3,9098	-0,3235**	0,0043		
질병 등 응급상황	3,0348	0,1795	0,0982		
특별한 동기 없음	-3,3452	-0,6625***	0,0000		
기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3,7430	0,3752**	0,0018		
안전거리미확보	-2,6120	-0,2618*	0,0149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8,2055	0,4853***	0,0003		
피해자의 처벌의사	-1,0722	-0,3509**	0,0041		
도주 후 복귀 여부	-1,8254	-0,2309	0,0518		

5)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사망)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사건의 수가 4건으로 회귀분석을 하기에 적기 때문에 회귀분석은 생략

6) 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상해)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사건의 수가 4건으로 회귀분석을 하기에 적기 때문에 회귀분석은 생략

7) 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1)

양형인자	B	beta	유의확률	R ²	F(p)
(상수)	10,3815		0,0000	0,418	4,421 (0,001)**
성별	-2,5827	-0,1997	0,0975		
경제활동	-4,3815	-0,2446	0,0484		
음주 정도 · 무면허 상태 오인	-2,7494	-0,2548	0,0369		
신호위반	-3,3815	-0,1888	0,1241		
속도위반	4,9173	0,1961	0,1004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7,6185	0,3038	0,0139		
합의 여부	-1,2987	-0,3544	0,0063		

*p < 0.05, **p < 0.01, ***p < 0.001